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75
----------	------

발의연월일 : 2017. 9. 5.

발의자 : 황주홍 · 이찬열 · 이동섭
정동영 · 김중로 · 주호영
김삼화 · 김경진 · 김종회
위성곤 · 강창일 · 이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골채 채취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채를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골재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49조, 제49조의2 신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채취기간”을 “채취기간 및 채취량”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4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

는 파쇄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u>채취기간</u>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 야 한다.	제26조(골재채취 등) ----- ----- ----- <u>채취기간 및 채취량</u> ----- -----.
제49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별 칙) ----- ----- <u>5년</u> ----- ----- <u>5천만원</u> ----- -----.
1. <u>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u>	<삭 제>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u>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u>	<삭 제>
4의2. <u>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u>	<삭 제>

자

5. · 6. (생 략)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한 자

<신 설>

5.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9조의2(별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
취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
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한 자